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7. 6 선고 2018가단147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오주석

피 고 1. C

2. D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E과의 사이에 2017. 9.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0. 11. 접수 제541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사는 별지 목록 기재 2, 3번 부동산에 관하여 E과의 사이에 2017.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3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2. 11. 접수 제66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번 부동산과 인접한 경주시 F 임야 106,575㎡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8. 2. 승려인 E을 상대로 ‘E이 경주시 F 임야 111,868㎡ 1) 에 옹벽, 화장실, 황토방, 닭장, 미나리밭을 설치점유하고 있다’면서 그 철거 및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7가단12571호로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E은 2017. 8. 11.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다.

다. E은 2017. 9. 1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법원 2017. 10. 11. 접수 제54149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E은 2017. 12. 10. 자신이 대표자인 피고 D사(이하 ‘피고 사찰’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3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7. 12. 11.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6636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8. 7. 17.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E이 2018. 8. 1.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2. 15. 2018나312631호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관련판결은 2019. 3. 6.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9. 4. 9. E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관련판결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2019. 4. 23. 2019카합9호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하여 E이 원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원고별로 각 1,049,723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H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였고, 2019. 4. 12. 옹벽, 화장실, 황토방의 철거 부분에 관한 인용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9. 7. 5. 대체집행비용으로 법원보관금 17,750,000원을 납부하였다.

아. E은 2020. 1. 23.경부터 2020. 9.경까지 스스로 대체집행 인용결정 대상을 철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옹벽의 철거 완료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집행관은 2020. 10. 19.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갈음하여 E이 원고들과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나 원고들의 동의에 기하여 옹벽을 신축하고, 원고들도 신축한 옹벽에 성토를 하는 등 사실상 E의 이 사건 임야 점유 부분을 인도받았으므로 집행목적 달성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들이 불응하여 집행불능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철거불능조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능통보’라 한다).

자. 원고들은 2020. 10. 29.경 이 법원에 이 사건 불능통보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 18. I로 ‘원고들과 E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집행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소속 집행관에게 옹벽에 대한 철거집행을 실시하라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7,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 및 증여 당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소송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들의 E에 대한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 위 각 상환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 원고별로 각 1,049,723원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과 원고들에게 총 2,417,700원(= 법원보관금 중 집행된 비용 513,800원 + 경계확정을 위한 원고들의 별도 지출비용 1,903,900원)의 대체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이 성립하였다. 위 각 상환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E은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 및 증여를 하였고,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다. 이 사건 매매 및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판단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청구의 내용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는 무관하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이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98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E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E이 최초로 패소한 이 사건 관련판결의 선고일인 2018. 7. 17. 최초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송의 승패 가능성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사실관계 뿐 아니라 소송물 및 이에 관하여 변론 중에 당사자가 행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관련소송 1심의 변론종결일인 2018. 6. 26.(갑 제5호증 참조)까지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승패 및 그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예견될 수 있을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2017. 9. 18.과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7. 12. 10. 당시에는 원고들의 E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 위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E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 및 증여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체집행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9. 7. 5. 대체집행비용으로 법원보관금 17,75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9호증의 2,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원보관금 중 513,800원이 이 사건 관련판결의 집행과정에서 여비우편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 원고들이 옹벽 철거와 관련하여 2020.

4. 24.경 및 2020. 7. 20.경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시사에 경계측량복원 비용 합계 1,703,900원을 지출하고 2020년경 J으로부터 출장 견적비로 200,000원의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E에 대한 대체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은 원고들이 E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승소한 후 실제로 원고들이 그 대체집행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대체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은 소송 결과 및 패소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대체집행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앞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련소송 1심의 변론종결일인 2018. 6. 26.까지는 대체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예견될 수 있을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2017. 9. 18.과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7. 12. 10. 당시에는 원고들의 E에 대한 대체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 위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E에 대한 대체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 및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피보전채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일

[별지]

목 록

1. 토지

경상북도 경주시 답 248평

2. 토지

경상북도 경주시 종교용지 992㎡

3. 건물

경상북도 경주시 동

일반목구조 토기와잇기지붕 단층 종교집회장(법당) 77.76㎡

끝.

1) 2018. 7. 25. 그 중 5,293㎡가 분할되어 경주시 G에 이기되었다.